

건설산업 기본법령상의 벌칙 ①

자료제공 / 건설경제

건설업체가 불법·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.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.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. 회원사 여러분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. [편집자 주]

| 위반사항 | 근거조항 | 처벌내용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■ 무등록 시공 등 ○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| 법 제9조제1항 법 제83조제1호 법 제96조제1호 | * 등록말소 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■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○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| 법 제9조제1항 법 제83조제1호 | * 등록말소 |
| ○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| 법 제13조 법 제83조제3호 | * 등록말소 |
| ○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한 자 | 법 제9조제4항 법 제81조제2호의2 | * 등록말소 |
| ○ 정당한 사유없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은 자 | 법 제9조 제4항 법 제81조제2호의2 법 제83조제6호 | 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등록말소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|
| ○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| 법 제10조 법 제83조제2호 | *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|
| ■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| 법 제16조 법 제82조제2항제1호 | * 영업정지 8월 또는 도급금액 30/100 이하의 과징금 |
| ■ 건설업 등록등의 대여금지 위반 ○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의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, 대여받은 자 및 알선한 자 | 법 제21조 법 제83조제5호 법 제96조제4호 | * 등록말소 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
| 위반사항 | 근거조항 | 처벌내용 |
|--|---|--|
| <p>■ 도급계약의 성실의무 위반</p> <p>○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p> | <p>법 제22조제1항</p> <p>법 제81조제2호</p> <p>법 제82조제1항제4호</p> | <p>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</p> <p>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및 지시 불이행시)</p> |
| <p>■ 도급계약서 서면작성, 교부의무 위반</p> <p>○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</p> | <p>법 제22조제2항</p> <p>법 제99조제2호</p> | <p>* 과태료 150만원 (일부 누락시 50만원)</p> |
| <p>■ 건설공사대장 비치의무 위반</p> <p>○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미통보 및 허위 통보한 자</p> | <p>법 제22조제3항, 4항</p> <p>법 제99조제3호, 제3호의2</p> | <p>* 과태료 100만원</p> |
| <p>■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</p> <p>※ 기술자 보유 포함</p> | <p>법 제23조제3항</p> <p>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</p> <p>법 제97조제1호의2</p> | <p>* 영업정지 4월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</p> |
| <p>■ 건설사업관리실적, 인력보유현황,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</p> | <p>법 제23조의2제2항</p> <p>법 제97조제1호</p> | <p>* 1천만원 이하 벌금</p> |
| <p>■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불이행</p> <p>○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</p> <p>○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</p> <p>○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</p> | <p>법 제28조제1항</p> <p>법 제81조제3호</p> <p>법 제82조제1항제4호</p> <p>법 제82조제1항제1호</p> <p>법 제82조제1항제1호</p> | <p>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</p> <p>*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</p> <p>*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</p> <p>*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</p> |
| <p>■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</p> <p>○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</p> <p>- 1인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</p> <p>- 2인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</p> | <p>법 제29조제1항</p> <p>법 제82조제2항제2호</p> <p>법 제96조제5호</p> | <p>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</p> <p>* 영업정지 8월 또는 하도급금액30/100 이하 과징금</p> <p>* 영업정지 6월 또는 하도급금액 24/100 이하 과징금</p> |
| <p>○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</p> | <p>법 제29조제2항</p> <p>법 제82조제2항제2호</p> <p>법 제96조제5호</p> | <p>* 영업정지 6월 또는 하도급금액 24/100 이하 과징금</p> |
| <p>○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</p> | <p>법 제29조제3항</p> <p>법 제82조제2항제2호</p> <p>법 제96조제5호</p> | <p>* 영업정지 4월 또는 하도급금액 16/100 이하 과징금</p> |

| 위반사항 | 근거조항 | 처벌내용 |
|--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건설업자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수급인의 서명승낙을 받아 하도급하는 경우 제외 | 법 제29조제4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 법 제96조제5호 | * 영업정지 4월 또는 하도급금액 16/100 이하 과징금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직접시공의무 관련 ○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| 법 제28조의2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| * 영업정지 6월 또는도급금액 24/100 이하 과징금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접시공계획을 미통보한 자 | 법 제28조의제2제2항 법 제99조제4호 | * 과태료 150만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뇌물수수금지 위반 ○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수액 1억원 이상인 때 - 수수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- 수수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- 수수액 1천만원 미만인 때 | 법 제38조의2 법 제83조제12호 | * 등록말소 또는 * 영업정지 8월 * 영업정지 6월 * 영업정지 4월 * 영업정지 2월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도급계약 통지위반 ○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않은 경우 | 법 제29조제5항 법 제99조제5항 | * 과태료 150만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통지를 허위로 한 경우 | 법 제29조제5항법 제82조제1항제3호 | *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○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치 않은 경우 ○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○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34조 법제81조제5호법 제82조제1항제4호 | 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○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이를 조정지급하지 않은 자 | 법 제36조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제4호 | 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검사 및 인도의무 불이행 ○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를 하여야 하고 설계 내용대로 준공될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37조 법 제81조제5호 법 제82조제1항제4호 | *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*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(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시) |